

# 「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시범사업」 2026년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기술지원

❖ 천연물 표준화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,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기술지원을 통해 강원도 천연물 산업 육성

## I 지원사업 개요

- 사업명: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허브 시범사업 표준화 기술서비스 지원
- 지원기간: 협약일 ~ 2026. 11월말
  - ※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 기업수, 지원기간, 내용, 비용 등 조정 가능
- 기술지원 기관: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, 서울대학교 GBST

## II 지원대상 및 내용

- 지원대상
  - 국내 천연물소재 관련 기업
  - 도내 천연물소재 지원이 필요한 생산자 단체 (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)
    - ※ 타 광역 시도 소재 생산자 단체 경우,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확정

###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(약칭: 농업식품기본법)

#### 제4조 생산자 단체의 범위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
2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
3. 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
4.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·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

## □ 지원 내용

○ 천연물소재의 맞춤형 원재료/원료 표준화 기술지원

-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지원의 유형별 수준/범위, 기간, 지원금액 등 결정

<표준화 기술지원 유형: 일반기술지원(A유형), 고도화기술지원(B유형)>

		지원 내용	지원 규모		
			정부지원금	현금매칭	현물매칭
A유형 (일반지원)	일반기술 지원형	“지원매뉴얼” 기준 표준화 지원 (유형선택)	최대 5천만원 이내	없음	없음
B유형 (고도화 지원)	B-1: 기술이전형 고도화 (선행기술이전 후 표준화)	기술지원기관 보유 특허/기술 이전을 통한 기업보유 기술고도화	최대 약 2억원	없음	없음
	B-2: 기업요구형 기술고도화 (선행표준화 후 기술이전)	선정기업의 표준화 공동기술개발지원 이후 특허/기술 이전	최대 약 2억원	50%~100% (정부지원금 대비)	없음

주1: 선정기업이 표준화기술지원기관에게 제공해야 하는 원물은 기업-기관별 최종 논의 후 제공 필수

주2: 강원특별자치도 외 소재 기업의 경우, ‘강원특별자치도(분소/지점/공장 등)이전의향서’ 제출 필수

주3: 지원예산규모는 지원기업수 및 지원희망 내용/범위에 따라 총 지원 예산 약 7억원에서 변동 가능  
(예시: 고도화 1건 3억원 또는 고도화 1건 1억원 배정도 가능)

주4: B-2 기술개발형의 경우, 기술지원 후 성과물(특허 등)에 대한 취득/관리, 경상기술료 징수 및 사용  
등은 기술지원기관(KIST, 서울대GBST)의 내규에 따름.

주5: B-1은 기술지원기관 보유 기술의 선 이전 후 기업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 표준화를 지원하는 유형임.

주6: B-2는 후 기술이전 조건으로 선 지원으로 기술개발을 추가로 진행한 다음 공동 특허 (5:5 또는 현  
금 매칭비율에 따라 비율 변동 가능, 100% 매칭시 특허 비율 5:5) 이후 50%의 특허지분을 기술이전  
받아가는 유형임.

주7: B-1, B-2 유형 모두 성과인 특허에 대한 지분을 설정, 기술이전료 설정 등은 상용화 성공에 따른  
경상기술료 설정 비율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음. 해당 비율은 대면평가 후 최종선정발표 전까지  
기업-기술지원기관 간 협의를 통해 확정.

**<지원 매뉴얼>**

지원분야	지원내용	비고
1. 원재료 생산 표준화 기술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기원종 감별 및 동정, 순도(동일성, 균일성) 검정</li> <li>○경제성 기반 종자 및 영양변식체 적합성 검토</li> <li>○원재료 재배기술 표준화 지원</li> <li>○원재료 병해충 진단 및 방제 지원</li> <li>○원재료 품종 선발 지원</li> <li>○원재료 생산기술 보급 및 교육 지원</li> </ul>	
2. 원재료 규격관리 표준화 기술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원재료 가공에 따른 세척, 건조, 저장의 체계 확립</li> <li>○경제성 기반 세척, 건조, 저장을 위한 필수 조건 확립</li> <li>○표준화 효율성을 위한 체계 확립</li> </ul>	
3. 맞춤형 원료 표준화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원료의 조추출물 조제 조건 수립</li> <li>○조추출물에서 용매 분획, 컬럼 분획 등을 이용한 분획물 조제 조건 확립</li> <li>○기능성, 특이성, 대표성, 안정성, 분석가능성 평가를 통한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설정</li> <li>○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에 따른 규격 설정</li> </ul>	<p>지원분야별 지원 내용/ 예상결과물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확정은 대면평가를 통해</p>
4. 원료 기능성 평가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세포기반 천연물 효능 유효성 평가</li> <li>○항암, 항염, 당뇨, 알레르기, 면역증강, 항산화 분야 항목에서의 유효성 및 동등성 평가</li> <li>○천연성분의 in vitro 생리활성 평가</li> <li>○비임상 유효성 평가 관련 실험 설계 및 자문</li> </ul>	<p>예비선정된 기업과 기술지원기관 간 협의를 통해</p>
5. 제조공정 표준화 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원료 제조를 위한 추출법 (용매, 온도, 시간, 건조 방법 등) 표준화</li> <li>○농축, 건조 및 제제화 공정 표준화</li> <li>○기준규격 설정 (안정성, 섭취용량, 유해물질 등)</li> </ul>	<p>최종 결정 (협의내용 상호작성 및 공유)</p>
6. 분석·검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유해물질 분석 및 검인증 연계 지원- 중금속, 미생물, 잔류 용매, 곰팡이독소, 잔류농약 등</li> <li>○기능/지표성분의 안정성 분석 및 검인증 연계 지원</li> <li>○소재별 성분 규명 서비스</li> <li>○소재별 기능성분, 유효성분 함량 분석 서비스</li> <li>○CRO/GLP 기관 연계 효능, 전임상, 임상 프로세스 지원 연계 서비스</li> <li>○소재 개발 프로세스 컨설팅</li> <li>○원재료별 유효·지표성분 표준 검출법 개발 서비스</li> <li>○기타 안전성 분석·인증 지원</li> </ul>	

### Ⅲ 추진일정

□ 추진 일정(예정) \*해당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

추진일정	추진절차	추진내용
26. 1. 9(금). ~ 26. 2. 4(수).	사업공고 및 접수	○ 모집공고, 신청서 제출·접수
~ 2. 4(수)~6(금)	서면 평가	○ 서면 평가(〔서식1〕참조) - 신청서 검토: 평가위원 사전평가(서면) ※ 서면검토 시 <b>본 공고내용과 무관</b> 하거나 지원내용이 <b>크히 불량, 모호한 경우</b> 발표평가 제외(탈락) - 제출 서류 중 신청서 외 기본서류 강원TP 검토  * 필요시, 서면평가 기간 중 평가위원들이 연락할 수 있음(Q&A 등)
~ 2. 6(금).	서면평가 결과 안내	○ 서면평가 결과 및 내용 ○ 대면평가 일정 안내 등
2. 11(수)~2. 13(금).	선정 평가 (대면발표)	○ 발표평가 및 컨설팅: 표준화 지원 필요성 및 범위, 내용 등 발표. - 평가결과: 지원범위, 소요기간, 비용 등 잠정확정  * 선정 평가 대상수에 따라 당일 혹은 1박 2일 일정이 될 수 있음
~ 2. 27(금).	선정평가 결과 및 협약체결 안내	○ 평가결과에 따른 기술지원기관과 우선선정기업 간 지원범위, 기간, 비용 확정 후 협약서 작성 및 공유(기술지원기관↔선정기업), 이후 기타 행정사항 안내(강원TP↔선정기업)
3. 3(화). ~ 3. 13(금).	협약체결	○ 표준화 기술지원 협약체결(매칭비용 선입금 포함) ※ 협약체결 과정에서 매칭비용(B-2유형 현금부담금) 납입 안내 사항(금액, 납입일시 등) 미 준수 시 선정 제외
협약일 ~`26. 11.30. (9개월)	기술지원	○ 유형A: 일반기술지원형만 <b>26.11.30</b> 일까지 지원 종료 ○ 유형B: 고도화지원의 경우, 선정평가 후 기술지원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간 설정 (필요시, <b>27년 11월말까지</b> 기간 설정 가능)
협약종료일~ 12일 이내 (12.12일 이내)	진행결과보고 및 컨설팅*	○ 표준화 기술지원 결과 보고 ※ 당해년 완료 가능한 지원내용에 한해서 결과보고 진행

\* 결과보고 및 컨설팅은 평가 개념보다는 표준화 기술지원과정에서의 매뉴얼 구축, 표준화 애로사항 도출, 표준화 결과 공유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

## IV 평가 절차 및 기준



□ **공고 및 접수** ※ (재)강원테크노파크 및 참여기관 등 홈페이지 공고

### □ 서면 평가

- (강원TP)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누락, 허위 기재 사실 여부 확인, 부적합 대상기업, 사업 목적의 적합성, 기타 서류 등 검토  
\*강원 도내 기업 또는 지방이전의향서 제출 서류 등
- (KIST & GBST) 제출한 기술지원신청서(서식1) 및 (필요시) 유·무선 인터뷰를 통하여 사업 필요성, 목표의 명확성, 지원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
- 선정대상 제외
  - 신청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사업내용(서식1)이 본 사업의 목적, 표준화 지원 내용,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  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처분 및 사업비 환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
  - 타 기관에서 기 지원된 기업지원사업이 중복되는 경우
  - 부도, 법정관리 중인 경우
  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
  -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
- 기타 유의사항
  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평가결과는 신청기업 등에 개별 통보함
  - 신청서에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·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및 지원협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 가능

## □ 선정평가(대면 발표 및 컨설팅)

- 관련 전문가(7~10인)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(대면 평가 원칙)
  - \* 대면평가/컨설팅을 통해 기술지원 가능유무, 지원가능 범위, 소요기간, 비용 등 확정
  - \* 대면평가 시, 발표 10분 내외, 질의응답&컨설팅 20분 내외로 진행 예정(단, 선정 평가 안내 시 변동될 수 있음)
- 평가기준(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준)

항목	내용	배점
표준화 지원 필요성 (30점)	○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	10
	○ 지원대상의 현 진행상황, 애로사항,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	10
	○ 표준화지원 대상의 차별성, 독창성 등	10
표준화 지원에 따른 성과창출 가능성 (40점)	○ 표준화지원에 따른 타깃시장(글로벌 포함) 진출 가능성	20
	○ 표준화지원에 따른 조기 상용화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	20
보유역량 및 잠재역량(20점)	○ 신청기업(관)의 사업화(인프라 확보 등) 역량 ○ 신청기업(관)의 표준화지원 후 활용 역량	20
기대효과/파급효과 (10점)	○ 매출증대,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	10

## □ 선정평가 결과 안내

- 선정 결과 및 협약체결 의향 안내(강원TP → 선정 대상)
  - 표준화 기술지원 여부, 표준화 기술지원 수준/범위, 비용, 소요 기간, 협약서 등
  - \* 차후라도 부적합 사유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## □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(기술지원 확정)

- 선정대상자는 기술지원 범위, 비용, 소요 기간, 제출 서류 등 평가결과 검토 후, 협약체결 여부 및 관련 자료 회신(선정 대상→강원TP)
- 이후, 협약 체결 문서 회신 및 매칭비용 납부(강원TP→선정 대상)
  - ※ **협약체결 과정에서 매칭비용(현금부담금) 납입 안내 사항(금액, 납입일시 등) 미 준수 시 선정 제외**
- 특약사항으로 본 사업 지원 결과를 활용한 상품 출원시 '2026년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시범사업 기술이전 지원받은 상품' 표기 \*문구 조정가능

## □ 표준화 기술지원 진행, 결과보고 및 컨설팅

- 표준화 기술지원 기간 : 협약일 ~ 2026. 11. 30.
- 당해년 진행완료된 내용 결과보고 및 컨설팅 진행(26년 12월12일 이전)

## V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**공고 및 신청기간**

- 모집 : '26. 1. 9(금). ~ '26. 2. 4(수). / 13시까지

□ **신청방법**

- (온·오프라인) 이메일 접수 후 원본제출 必(우편 또는 방문)

※ 온라인 제출 : (재)강원테크노파크 오덕기 odg0207@gwtp.or.kr

※ 오프라인 제출 : 강원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두개비산로 199-9 강원테크노파크

※ 유의사항: 오프라인 제출시 담당자에게 마감일 및 마감시간 전까지 전달해야 오프라인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됨.

- 문의처

기관명	담당자명	이메일	전화번호	문의
강원테크노파크	오덕기	odg0207@gwtp.or.kr	033-435-8460	접수 문의
KIST 천연물연구소	김호연	hykim@kist.re.kr	033-650-3580	표준화 기술지원
서울대 GBST	서장균	jangseo@snu.ac.kr	033-339-5877	표준화 기술지원

□ **신청서류**

구분	제출서류 목록	제출부수
필 수	1.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기술지원 신청서 ([서식1]참조)	1부
	2.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(해당시) 사본 ※ 영농조합법인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	각 1부
	3. 개인정보이용동의서 ([서식2]참조)	1부
	4.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([서식3]참조)	1부
	5. 최근 2개년 재무제표 ※ 신규창업으로 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기업은 부가가치세과 표준증명원 제출(국세청 홈택스 출력 가능) ※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경우,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(eg.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원 등)	각 1부
해당시	6. 기업 이전 의향서 ([서식4]참조)	1부
	7.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※ 직접수출은 (한국무역협회 발급), 간접수출은 (ustradehub 발급)	각 1부
선정시	8. 협약체결 요청 공문	1부

첨부 [서식 1]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기술지원 신청서 1부.

[서식 2] 개인(기업)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.

[서식 3]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.

[서식 4] 기업 이전 의향서 끝.